

행 정 안 전 부

시정요구

제 목 과 설치 일반요건인 정원(업무량) 기준 미준수

기 관 명 인천 , 인천 , 인천 , 인천 연수구, 인천

내 용

과(課)는 보조기관의 최소 단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4항에 의하면 “과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도는 5급 4명 이상, 시·군·자치구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라고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22.6월 기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과 단위의 평균 정원은 22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등 5개 자치단체는 일반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 정원을 12명 미만으로 운영함으로써 업무량과 통솔범위의 최소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등 조직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 정·현원이 12명 미만 부서(課) 운영 현황 >

지자체명	실·국	과명	정원	현원
인천	-	(4급)	8	8
	-		6	6
			9	10
			8	8
인천			6	5
			8	6
인천	-		10	10
	-		5	5
			9	9
			8	8
인천 연수구	보건소(4급)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5급)	7	9
인천			10	10

조치할 사항

인천 , 인천 , 인천 , 인천 연수구청장, 인천
청장께서는

정원이 12명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과·담당관에 대하여 적정한 기능을
보강하거나 통폐합하는 등 시정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및 정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행 정 안 전 부

시정요구

제 목 한시기구 설치협의 부적정

기 관 명 인천 , 인천 연수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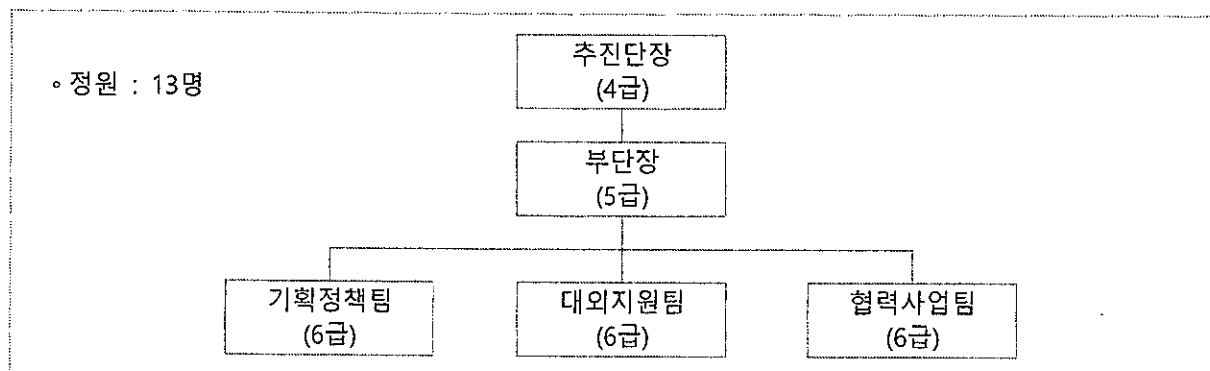
내 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하며,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 규정 제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유네스코에서 주최하는 「2021년 제5차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회의(’21.10.27.~10.30./4일)」 개최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와 협의를 통해 ‘유네스코 국제회의 추진단’을 국장급 기구로 설치, ’21년 3월부터 ’22년 2월까지 1년간 운영하였다.

< 유네스코 국제회의 추진단(4급) 설치 현황 >



‘유네스코 국제회의 추진단’은 하부에 과장급 부단장 및 3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정원은 13명으로 국 단위 업무량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국제회의 개최까지 8개월 정도 기간이 남아있어 1년 이상 업무량을 충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국장급 추진단장과 하부에 과장직위가 사실상 통솔범위 및 기능이 중복돼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인천광역시는 법령상 한시기구 설치·운영 규정 준수와 자치단체 조직 및 인력관리의 건전성 등을 위하여 향후 한시기구 설치 협의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적절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조치할 사항

인천

~~한시기구 적정 협의기준 등을 포함한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행 정 안 전 부

시정요구

제 목 인천광역시 및 관할 구·군 소속 위원회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인천 , 인천 , 인천 , 인천 , 인천 ,
인천 연수구, 인천 , 인천 ; 인천

내 용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15.9월~) 및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16~‘22년)을 통해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에 대한 정비방안을 통보한 바 있다.

이는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세부 정비방안으로 위원회 기능 및 필요성을 자체 검토 후 실효성, 안건 특성 등에 따라 위원회 폐지, 통폐합, 협의체 전환 등을 실시할 것을 안내하였다.

【 위원회 정비 기준 】

1. 폐지 : 목적 달성 등 존치 필요성이 소멸된 위원회
2. 통폐합 : 동일 법령 또는 동일 부처 소관으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3. 존속기한 설정 : 영구 존속사유가 없는 경우 존속기한 명시(5년 이내)
4. 협의체 전환 :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적은 내부 행정에 관한 심의 위원회
5. 비상설화 :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및 산하 군·구에 대한 위원회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법령상 임의 설치 가능하거나 조례 등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 위원회 중 최근 3년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의 경우, 존속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기와 같이 정비하여야 하나, 일부 위원회가 그대로 존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 조례·규칙 개정 등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위반사항 : 불임)

조치할 사항

인천 , 인천 , 인천 , 인천 , 인천 ,
인천 연수구청장, 인천 , 인천 , 인천 계서는

상기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부합하도록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폐지 등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붙임】

<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최근 3년간 미개최 위원회 현황>

자치단체명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 수
		법령 (강행)	법령 (임의)	조례 등	
인천	자치분권협의회		○		11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용자대상 선정위원회			○	9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		6
인천	자가진단제도실무위원회			○	10
	청백e시스템실무위원회			○	7
	남북교류협력위원회			○	15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	0
	문화예술진흥위원회			○	8
	운영위원회			○	13
	센터운영위원회			○	15
	범죄예방도시디자인위원회			○	13
인천	향토문화유산위원회			○	0
인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	7
	운영위원회			○	14
인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		8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		4
인천 연수구	민간투자심의위원회		○		15
	관광진흥위원회			○	13
인천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			○	9
인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		10
인천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	6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	11
	편찬위원회			○	0
	축제위원회			○	0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		○		8
	안전한마을협의회			○	15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		0
	체험휴양마을운영위원회			○	9
	노사민정협의회		○		14
	식생활교육위원회		○		13

행 정 안 전 부

개선권고

제 목 인력운용계획 및 기구·정원 관리·운영 현황 지방의회 제출 및 보고

기 관 명 인천 , 인천 , 인천 , 인천 연수구, 인천

내 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동 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인력운용계획을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인력운용의 안정성·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동 규정 제40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의2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매년 기준인건비 집행 현황 등 기구와 정원의 관리·운영 현황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제출 대상·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19년)을 통해 기구 및 정원의 관리·운영 현황을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매년 12월)토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하여 조직 운영토록 안내한 바 있다.

❖ 지방의회 의무 제출사항 (「기구·정원 규정」 제40조 및 '19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편집)

- ① 인력 재배치·효율화 계획 ② 기구·정원 현황 및 증설 내역 ③ 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집행현황(초과운영 시 사유 첨부) ④ 행정안전부 조직진단 및 감사 결과, 자치단체 자체진단 결과 ⑤ 한시기구·한시정원 현황 ⑥ 전문임기제 운영 현황 ⑦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

인천광역시 및 산하 군·자치구에 대한 지방의회 제출 및 보고사항 등을 점검한 결과, 기구정원 운영현황, 자체 조직진단 결과 등을 최근 3년간 지방의회에 제출하지 않는 등 일부 분야에서 미흡한 부분(위반사항 : 불임)이 확인되었다.

이에 인천광역시 및 산하 군·자치구는 규정과 지침에 따라 관련 자료 작성 및 지방의회 제출·보고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 , 인천 , 인천 , 인천 연수구청장, 인천
께서는

집행부와 의회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조직 및 인력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운영계획 및 기구·정원의 관리·운영 현황을 내실 있게 작성, 지방의회에 제출 및
보고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권고)

【붙임】

< 기구 및 정원 관리·운영 현황 지방의회 제출 및 보고 위반여부 확인 >

구 분										연수구						
①인력 재배치·효율화 계획	'20.12.30. '21.12.28.	'19.12.31.	'19.12.26.	'19.12.27.							'19.12.2.					
		'20.12.27.	'20.12.08.	'20.12.29.							'20.12.4.					
		'21.12.20.	'21.12.13.	'21.12.31.							'21.12.28.					
②기구·정원 현황 및 증설 내역	'20.12.30. '21.12.28.															
		'19.12.31.	'19.12.26.	'19.12.27.							'19.12.2.					
		'20.12.27.	'20.12.08.	'20.12.29.							'20.12.4.					
③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집행현황 (초과운영 시 사유 첨부)	'20.12.30. '21.12.28.	'21.12.20.	'21.12.13.	'21.12.31.							'21.12.28.					
④행정안전부 조직진단 및 감사 결과, 자치단체 자체진단 결과	'20.12.30. '21.12.28.															

구 분											연수구						
⑤ 한시기구·한시 정원 현황	'20.12.30.	'19.12.31.	'19.12.26.	'19.12.27.								'19.12.2.	'19.12.13.	'19.12.10.			
	'21.12.28.	'20.12.27.	'20.12.08.	'20.12.29.	'20.12.29.	해당없음	해당없음	'20.12.4.	'20.12.14.	'20.12.04.	해당없음	'20.12.4.	'20.12.14.	'20.12.04.	해당없음		해당없음
		'21.12.20.	'21.12.13.	'21.12.31.	'21.12.31.			'21.12.28.	'21.12.13.	'22.01.28.		'21.12.13.	'21.12.13.	'22.01.28.			해당없음
⑥ 전문임기제 운영 현황	'20.12.30.		'19.12.26.	'19.12.27.				'19.12.2.	'19.12.13.	'19.12.10.		'19.12.13.	'19.12.10.	'19.12.10.			
	'21.12.28.	해당없음	'20.12.08.	'20.12.29.	'20.12.29.	해당없음	해당없음	'20.12.4.	'20.12.14.	'20.12.04.	해당없음	'20.12.14.	'20.12.04.	'20.12.04.	해당없음		미제출
⑦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	미제출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⑧ 중기기본인력계획	'21.12.02.	'19.12.31.	'19.12.26.	'19.11.25.	'19.11. 8.	'19.11.7.	'19.12.13.	'19.11.10.	'19.11.10.	'19.11.20.		'19.11.10.	'19.11.20.	'19.11.25.			'19.12.30.
	'20.12.01.	'20.12.27.	'20.12.08.	'20.12.09.	'20.11.10.	'20.11.12.	'20.11.24.	'20.11.10.	'20.11.10.	'20.12.04.		'20.11.10.	'20.12.04.	'20.11.25.			'20.12.10.
	'19.12.10.	'21.12.20.	'21.12.13.	'21.12.03.	'21.11.11.	'21.11.8.	'21.11.22.	'21.11.11.	'22.11.10.	'21.12.08.		'22.11.10.		'21.11.25.			'21.12.13.